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핵심기술 정보의 예외적 공개 사유 추가 등〉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51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국가핵심기술 정보의 예외적 공개 사유 추가	4
2. 산업기술 정보의 적법한 취득 경로의 법률상 명시	11
3. 비밀유지의무 대상자의 범위 조정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2. 05.
3. 회 부 일 : 2025. 12. 0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왔으나, 지난 2019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보의 내용과 성격, 공개의 대상 및 목적 등에 대한 고려없이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아닌 대국민 정보공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1990년에 이미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 170호 화학물질협약 등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여타의 국내법의 관련 규정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

성을 높여나감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해 온 그간의 입법 추세에도 어긋남.

따라서 국민의 생명·신체·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 공익을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정보 공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적 요건 역시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조정하고, 해당되는 정보의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의 유출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경우 역시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공무원으로 한정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공개 규정의 단서 조항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정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명시함(안 제9조의4제1항).

나. 정보 비공개 단서 조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9조의4제2항).

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경로’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함(안 제14조제12호).

라.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경우를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로 규정하고,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함(안 제34조제10호).

Ⅲ. 검토의견

1. 국가핵심기술 정보의 예외적 공개 사유 추가

개정안은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인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정보’에 더하여,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의4제1항 각 호 신설),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의 동의 절차를 두지 아니하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4(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u>국가의 안전보</u>	제9조의4(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핵심기술 정보의 비공개 원칙은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하여 공개·유출될 경우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라 하더라도 목적 외로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 8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현행과 같이 국가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것임.

그러나 2019년 개정 이후 국가핵심기술 정보의 내용·성격·공개 목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포괄적 비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현행 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정보 활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음²⁾.

2)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알 권리와 건강권 침해”…헌법소원 청구(KBS뉴스, 2020.03.05.)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개정안은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정보 외에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예외적 공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즉,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현행 제도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정보의 성격과 공개 목적을 고려하여 공공의 안전 및 환경적 영향과의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예외적 공개 가능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될 경우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민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 공개 기준을 현행법상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3)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예외적 공개 사유 중 사업활동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6. (생략)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으로 인한 생명·신체·건강 보호 필요성과 유사한 수준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상의 공개 요건에 정보공개법상 예외 기준을 중첩하여 적용할 경우,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 기준이 이중으로 설정되어 예외적 공개 범위가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정보공개법에는 환경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한편,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의 예외적 공개 절차와 관련하여, 종전과 달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 절차를 두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그러나 특정한 기술이 예외적 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련 산업 및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요구되는바, 이러한 판단을 위원회의 심의만으로 결정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생략)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행법 제11조⁴⁾ 및 제11조의2에서⁵⁾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 등의 승인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정보 공개에 있어서도 관계 부처의 전문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의 절차를 협의 절차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국가정보원은 관계 부처의 사전적인 검증 절차 없이 위원회 심의만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종합해 볼 때, 개정안에 따른 예외적 공개 사유는 국가핵심기술 정보의 보호 필요성과 공익 보호 간의 조정을 전제로 하는바, 공개 대상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해외인수·합병등에 따른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정보의 범위 및 공개 절차의 설계에 있어서는 해당 위해의 성격과 정도, 정보 공개가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판단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기준과 절차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산업기술 정보의 적법한 취득 경로의 법률상 명시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산업기술 정보의 적법한 취득 경로를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제14조제12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1. (생략) 12. <u>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u> 13. (생략)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 금지)----- -----. 1. ~ 11. (현행과 같음) 12. <u>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u> ----- ----- ----- ----- 13.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4조제12호6)는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1. (생략)

12.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기술 정보의 적법한 취득 경로에 관해서는 현행법 시행령 제19조의2⁷⁾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산업기술 정보의 적법한 취득 경로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이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임.

특히,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규정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 제36조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3. (생략)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법 제14조제12호에서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4조제12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금지행위의 성립 요건과 그 전제가 되는 산업기술 정보의 적법한 취득 경로는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될 필요성이 큼.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은 산업기술 정보의 적법한 취득 경로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여 형벌 부과와 직결되는 규범에 대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산업통상부도 이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3. 비밀유지의무 대상자의 범위 조정

개정안은 비밀유지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산업기술 정보에 접근·취득하게 되는 업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 및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해당 비밀유지의무의 적용 대상자를 공무원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10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비밀유지의무)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u>청구</u> , 산업기술 <u>관련</u> 소송 <u>업무</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업무를</u>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u>자</u>	10. ----- ----- <u>업</u> <u>무</u> 및----- <u>유출 및 침해에</u> <u>관한</u> ----- <u>업무를</u> ----- ----- -- <u>공무원</u>

현행법 제34조제10호⁹⁾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기술 정보에 접근·취득하게 되는 업무(이하 “산업기술 정보 취득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 제36조의2¹⁰⁾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산업기술 정보 취득 업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이를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로 한정하고, 비밀유지의무 대상자를 공무원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9. (생략)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 법 제34조제10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
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

앞서 살펴본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4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¹¹⁾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위반행위의 성립 요건과 그 전제가 되는 산업기술 정보 취득 업무는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될 필요성이 큼.

이와 같이 산업기술 정보 취득 업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부분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비밀유지의무 범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도 이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자를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 및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전체에서 ‘공무원’으로 한정할 경우, 해당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산업기술 정보에 접근하는 다양한 주체에 의한 유출 가능성을 오히려 확대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¹²⁾과 「중소기업기술 보호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⑥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 및 학생 등 관계자를 포함한다)
2.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지원에 관한 법률」¹³⁾ 등 현행법과 유사한 기술보호 입법례에서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기술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자 전체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여타 입법례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현행법 제34조¹⁴⁾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산업기술 보호

-
3.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제11조에 따라 유출 및 침해행위의 신고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제12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12조에 따라 침해신고 접수, 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8조에 따라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3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장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 3의2. 제11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직원
- 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 제17조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 수행자를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호 역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¹⁵⁾.

이는 제10호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산업기술 정보를 취득·인지하게 되는 관련 주체 전체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제1호부터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대비하여 규율 대상의 성격이나 범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산업기술 보호라는 동일한 목적하에 규율되는 비밀유지의무 대상자 중 제10호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자에 대해서만 그 범위를 공무원으로 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국가핵심기술 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대학·연구소, 산업기술 침해소송 관련 변호사·소송당사자 등을 통한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 역시 정보공개 및 소송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수의 비공무원이 산업기술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15) 제34조제10호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산업기술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자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제1호부터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실질적인 규율 대상의 범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됨.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¹⁶⁾이 현재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7

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295호, 2025.12.16. 발의)